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20.4.22.(수) 17:00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박우양 의원 등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3. 제안 이유

○ 도지사는 5년 마다 동물복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

4.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맹견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3조)

다. 적절한 사육·관리를 위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안 제4조의2)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규정 신설  
(안 제9조)

마.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의 추가(안 제11조)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마다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적절한 사육·관리를 위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준수사항 등 신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함.